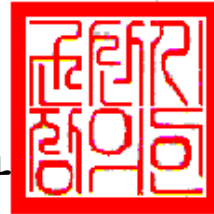


군산시 규칙 제850호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와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통장의 자격)** ① 이·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책임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1. 신설된 통·리의 경우
- 2. 지원 신청자가 없어 읍면동장이 적격자를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통장이 될 수 없다.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6. 이·통장의 임기 중에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이·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제2조의 자격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모집방법 및 접수)** ① 이·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18세 이상 세대별 1명)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한 주민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우선한다.

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해임·면직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를 포함한 관내 3개소 이상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 지원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주민총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에 한하여 제출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이·통장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
3.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와 사실확인서
5.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총회 회의록

**제4조(읍면동 이·통장 선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읍면동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이·통장 선발 절차를 위해 읍면동 이·통장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외 위원은 군산시에서 거주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 해당 읍면동의 자생단체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에 따른 자격
  2. 이·통장 지원 신청자의 서류, 필기, 면접 심사
  3. 이·통장 임명대상자 선발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이·통장 임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이·통장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자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⑧ 읍면동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한 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⑩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사실 및 이·통장 선발 심사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 및 선발)** ① 이·통장은 별표 1 ~ 별표 3의 심사표에 따라 서류심사 및 필기·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하며, 총 100점을 만점으로 각 심사항목의 배점 비율은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자가 1명인 경우
2. 지역 여건상 필기시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읍면동장이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위원회 심사 후 이·통장으로 선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자를 심사하고, 최고 득점자를 이·통장으로 선발한다. 다만, 면접시험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득점으로 인정한다.
- ④ 공개모집 지원 신청자가 1명인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사 후 임명대상자를 선발한다.
- ⑤ 제2항의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면접 심사 점수, 자원봉사 실적, 거주 기간, 연령순으로 임명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이·통장의 임명)** ① 읍면동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대상자를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 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지원 신청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③ 읍면동장은 이·통장 임명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임명장을 수여한다.
- ④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이·통장의 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연임한 사람이 공개모집에 단독으로 지원한 경우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총회를 통해 추천된 자
3. 제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

② 결원으로 보충된 이·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임명사항 보고)** 읍면동장은 제6조에 따라 이·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 또는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이·통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 이·통장 지원신청자 사전심사표(제5조 관련)

대 상 자

읍면동		모집 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
주소							휴대폰)

심 사 표

	심사항목 (비율)	기 준	배점	득점	비 고
서류	1. 해당 통·리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년 이상			· 주민등록 기준 누적합산
		20년 이상~2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0년 미만			
	2. 최근 3년간 자원봉사 활동경력	50시간 이상			· 증빙서류 첨부 (봉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
		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10시간 미만			
		봉사활동 경력 무			
	3. 이·통장 활동집중도	직업 없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직업 있음			
	4. 이통장 경력	경력 없음			
		1회 이상~2회 미만			
		2회 이상			
	필기				
계					

확인자(간사)	소 속		직위		성명	(인)
---------	-----	--	----	--	----	-----

※ 상기 사전심사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별표 2]

# 이·통장 지원신청자 면접심사표(제5조 관련)

## □ 대 상 자

읍면동		모집 통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폰)

## □ 심 사 표

심사 항목(점수)		기준	배점	득점	비 고
면접	1. 지원 동기, 활동계획	우수			.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 지원동기 등
		보통			
		미흡			
	2. 봉사활동 지역관심도	우수			. 시정현황 인지도
		보통			
		미흡			
	3. 이·통장의 임무 및 사명감	우수			. 통장·이장의 임무 . 숙지 여부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보통			
		미흡			
	4. 인품, 태도 등	우수			.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보통			
		미흡			
<b>계</b>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 및 배점을 변경할 수 있음.

※ 위 심사 항목에 따라 읍면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가능함.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인)

[별표 3]

# 이·통장 지원신청자 최종심사표(제5조 관련)

지원신청자 득점 현황

지원신청자		심사항목	배점	득점	비 고
읍면동(○통)	사진	계			
		서 류			
성명(생년월일)		필 기			
		면 접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인)

심사위원 성명 (인)

심사위원 성명 (인)

심사위원 성명 (인)

심사위원 성명 (인)

심사위원 성명 (인)

심사위원 성명 (인)

※ 상기 최종심사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서식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군산시 ○○읍면동 공고 제 호

# 이·통장 모집 공고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읍면동 이·통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 리·통명: ○○읍·면·동 ○○리·통      ○ 세대수 :

자격요건

- 책임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

모집 방법

1. 공개모집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18세 이상 세대별 1명)의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한 주민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추천

※ 이·통장 모집 공고 1주 전 해당 통/분리 사전 협의

접수 기간 : . . . ~ . . .

※ 읍면동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제출 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공통] 지원신청서, 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약서와 사실확인서,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포함)
- [해당자에 한함]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최근 3년간), 이·통장 활동경력에 관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 [주민총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 주민총회 회의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음

접수처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년 월 일  
군산시 ○○읍면동장

\* ‘신설 통·리, 2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자격요건 변경 기재  
 \* 읍면동 실정에 맞게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 아·통장 지원 신청서

읍 면 동		통 / 분 리	통 / 분 리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이 메 일	
주 소			
지 원 동 기			
활 동 계 획			

상기 본인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임명이 취소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서명)

##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호서식]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1부
2.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사실확인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b>주요 경력 및 활동 사항</b> (읍면동 행정 및 사회단체 활동을 통한 지역 발전과 봉사 참여 실적 등)			
<b>사 진</b> (최근 6개월이내)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남/ 여
거주기간	(주민등록상 해당 이·통반 거주기간)		
봉사실적 (최근 5년)	총 00시간 00분 (1365 봉사활동 실적 증빙)	직 업	(구체적 기재)
기 간	주요 경력 및 활동사항		기 관 명

[별지 제4호서식]

[이·통장 공개모집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군산시에서는 효율적인 이·통장 모집·선정·활동지원 및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이·통장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 수집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수집목적 : 이·통장 임명, 안내사항 전달, 이·통장증 발급,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등 지원사항 안내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연락처,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 수집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이메일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동의안함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군산시에서는 효율적인 이·통장 업무 활동지원 및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하고자 합니다.

- 제공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 제공목적 및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군산시의회	의정자료 제공	성명, 주소, 연락처
상해보험사	상해보험 가입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문서·전자문서 제공, 이메일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함     동의안함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앞면)

# 서 약 서

본인은 이·통장 지원 신청자로서 아래의 내용을 읽고 숙지하였으며 이행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I. 이·통장 지원 자격에 있어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서약한다.
- II. 이·통장 재직 중에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읍면동장에게 통보할 것을 서약한다.
- III.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준수하고, 읍면동과 적극 협력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지거나 이행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진 사퇴 및 임명 제외, 해임 등 그 어떤 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통장 지원신청자 \_\_\_\_\_(서명 또는 인)

붙임 사실확인서(뒷면) 1부

**○○읍면동장 귀하**

(뒷면)

# 사 실 확 인 서

※ 신청자 본인 작성

지 역	○○읍면동 ○○통·리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주 소				휴대폰)	
구 분	확인사항				본인확인란
이·통장 자격 해당여부 (규칙 제2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공고 지역의 일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 여부 (※ 예외: 행정구역 조정 등)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지원 연령 2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이·통장의 임기 중에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자진 사퇴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만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됨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자진 사퇴 및 임명 제외, 해임 등의 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이·통장 지원신청자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 주민총회 회의록

000읍면동 0통/00분리

		결 재

일 시	20 . . . ( ) :		장 소	
참석현황	총 세대	참석 세대	불참 세대	비고

회의내용	<p>○ <b>00마을/00통 이·통장 추천</b></p> <p>- 이·통장 후보자 명단</p> <p>① ㉠㉠㉠ (생년월일 : )</p> <p>② ㉠㉠㉠ (생년월일 : )</p> <p>③ 000 (생년월일 : )</p> <p>- 이·통장 후보자 투표 결과</p> <p>① ㉠㉠㉠ 00표 득표</p> <p>② ㉠㉠㉠ 00표 득표 (추천 후보자 결정)</p> <p>③ 000 00표 득표</p> <p>○ <b>전임 이·통장 사임 확인</b></p> <p>주민총회에 결과에 따라 이·통장을 사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000 이·통장 ㉠㉠㉠ (인)</p> <p>○ <b>신임 이·통장 승낙 확인</b></p> <p>주민총회에 결과에 따라 이·통장을 승낙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000 이·통장 후보자 ㉠㉠㉠ (인)</p> <p>○ <b>주민총회 참석 명부 및 투표 사항(가나다순)</b></p>
------	---

번호	성명	서명	지지 후보자	번호	성명	서명	지지 후보자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상세 내용 기재

- 
- 
- 

○ 주민총회 사진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 임 명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동 ○○이·통장으로 임명합니다.

임기 : . . . ~ . . . (00년)

년 월 일

**군 산 시 ○ ○ 읍 면 동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 재 직 증 명 서

발급번호 ○○읍면동 20 - 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직 위			
	재직기간	20 . . . ~ 20 . . . .		
용 도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발급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연락처	
-----	----	----	----	-----	-----	--

군산시 규칙 제851호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22조제1항” 을 “훈령 제1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22조제2항” 을 “훈령 제12조제2항” 으로 한다.

제7조 중 “규칙 제49조제2항” 을 “훈령 제32조제2항”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97조” 를 “훈령 제77조제4항”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 을 “훈령 제105조제1항”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0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② 「군산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67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③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④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⑤ 「군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군산시양성평등기금운용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기타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의회</li> <li>○ 보건소</li> <li>○ 농업기술센터</li> <li>○ 읍·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관서 이외의 관서</li> </ul>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관·과·소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1. ~ 3. (생략) ② ~ ④ (생략)</p> <p>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u>규칙 제22조제1항</u>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p>	<p><u>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p> <p>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u>훈령 제12조 제1항</u>----- ----- ----- -----</p>

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 회계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 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생략)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생략)

-----  
-----  
-----.

② 훈령 제12조제2항-----  
-----  
-----.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  
-----  
-----.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 규칙 제852호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0일



군 산 시 장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내” 를 “관내에서 숙박하고 관내” 로, “이용 또는 전통 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유료관광지” 를 “이용과 관내 관광지” 로, “관광 또는 군산시 농촌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 을 “방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람하며(필수),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 또는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군산시 농촌 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택 1)” 을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료관광지” 를 “관내 관광지” 로, “관광하며(필수), 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 또는 군산시 농촌체험교육장 이용 중 한 가지 이상(택 1)” 을 “방문”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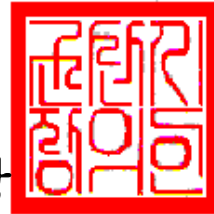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조건) ① 조례 제15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지원은 <u>관내</u> 음식점 1회 이상 <u>이용</u> 또는 <u>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u> 또는 <u>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u> 또는 <u>군산시 농촌체험교육장 이용</u>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p> <p>②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정한 조건이란 <u>관내</u> 음식점을 1회 이상 <u>이용</u>하고 <u>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람</u>하며(필수), <u>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u> 또는 <u>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u> 또는 <u>군산시 농촌 체험교육장 이용</u> 중 한 가지 이상(택 1)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p> <p>③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u>관내</u> 음식점을 1회 이상 <u>이용</u>하고 <u>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u>하며(필수), <u>전통시장을 관광코스로 운영</u> 또는 <u>군산시 농촌체험교육장 이용</u> 중 한 가지 이상(택 1)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p>	<p>제5조(지원조건) ①</p> <p>-----  ----- <u>관내에서 숙박하고</u> -----  <u>관내</u>-----  <u>이용과 관내 관광지</u>-----  <u>방문</u>-----.</p> <p>② -----  -----  -----<u>관내</u>  <u>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u> -----  -----  -----.</p> <p>③ -----  -----  ----- <u>관내</u>  <u>관광지</u> ----- <u>방문</u>  -----  -----.</p>

군산시 공고 제2025-392호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원대상을 각급 학교 학생과 그 보호자, 학교 밖 청소년과 그 보호자까지 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 기존 교육경비 보조사업 외에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발전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
  - 각급 학교 학생과 그 보호자, 학교 밖 청소년과 그 보호자 추가
- 지원사업 확대(안 제16조)
  - 기존 교육경비 보조사업 외 교육발전 지원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 추가

3. 입법예고 기간 : 2025. 2. 20.(목) ~ 2025. 3. 7.(금) <1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7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

군산시청 교육지원과

(전화 : 063)454-2582, FAX : 063)454-6011, 전자우편 : hanbit8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육지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양식) 1부.
  - 2.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발전 지원사업”이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3.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 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1.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생과 그 보호자
2. 관내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과 그 보호자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육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장의 제목 “각급 학교 보조”를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학교”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교육경비보조)”를 “(교육경비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여부”를 “보조 여부”로 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교육발전 지원사업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교육발전지원 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습·진로·진학 등과 관련한 교육 지원 사업
2. 진로·진학·학업 상담 관련 지원 사업
3. 각종 교육 지원 사업에 필요한 이동수단 지원 사업
4. 온라인 학습 강의 수강권 및 교재 지원 사업
5. 멘토링 지원 사업
6. 자녀교육·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앞의 “제4장 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위원회

제17조제4항 단서 중 “관계기관·”를 “관계 기관·”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시장이 부의하는”을 “시 교육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군산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를 말한다.</li> <li>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li> </ol>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경비 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li> <li>2. “교육발전 지원사업”이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li> <li>3.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li> </ol>

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이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 보조를 통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 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사업에 적용한다.

1.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생과 그 보호자
2. 관내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과 그 보호자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각급 학교 보조

제5조(보조사업의 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각급 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에 교육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 7. (생략)

제6조(교육경비보조)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생략)
-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

위탁교육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육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5조(보조사업의 범위) -----  
-----  
----- 학교 -----  
-----  
-----  
각 호-----.

-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경비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①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지급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제15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정보공개)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내용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1. 단체명, 단체 전화번호
- 2. 대표자명

제7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①-----

-----  
-----  
-----  
----- 제출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②-----  
-----  
-----  
-- 보조 여부-----

1.·2. (현행과 같음)

제4장 교육발전 지원사업

제15조(교육발전지원 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학습·진로·진학 등과 관련한 교육 지원 사업
- 2. 진로·진학·학업 상담 관련 지원 사업
- 3. 각종 교육 지원 사업에 필요한 이동수단 지원 사업
- 4. 온라인 학습 강의 수강권 및

교재 지원 사업

5. 멘토링 지원 사업

6. 자녀교육·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신 설>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삭 제>

제5장 위원회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관계기관 . -----  
-----  
-----  
----- .

제19조(위원회 기능) -----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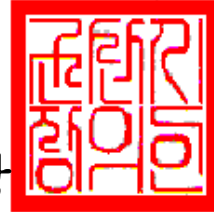
4. ----- 시 교육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22조(준용) -----  
----- 「지방자치단체의 교  
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

군산시 예규 제49호

군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2월 2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

군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로서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군산시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시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시장인 경우, 부시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



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⑥ 시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시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시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시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시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시 소속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

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시장인 경우, 부시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시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시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시 소속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는 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시 소속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시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시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 소속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시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시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 ① 시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시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7

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8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24조(교육) 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6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자문기구의 위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징계양정 기준) 시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업 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 법」	제10조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의 수립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의 승인
			제12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2	개발제한 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 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9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의 작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의 승인
4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 법」	제6조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제17조	지구계획의 승인
5	공항시설 개발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7	국방·군사시설 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연번	부동산 개발업 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8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9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10	마을정비구역에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11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12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의 지정
			제13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13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5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연번	부동산 개발업 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4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1조의3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5	혁신지구재생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제46조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6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 구역의 지정
			제13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7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8	물류단지개발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연번	부동산 개발업 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9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 구의 지정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 구계획의 작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 구계획의 승인
20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 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1	산업단지개발 사업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연번	부동산 개발업 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22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 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가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제21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23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제11조의2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작성
				새만금사업의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24	역세권개발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제13조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5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제27조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6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7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연번	부동산 개발업 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28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147조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29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30	로봇랜드 조성 사업	「지능형 로봇 개 발 및 보급 촉진 법」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제31조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31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32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 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3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4	항만재개발 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의 지정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연번	부동산 개발업 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35	혁신도시개발 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11조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작성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36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37	예비타당성 조사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별표2]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7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및 제7조의 조치 미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 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 제2항 위반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자 료제출 등 거부 행위 제20조의2의 특별보호 조치 결정 미이행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	-----	-----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	----	----	--------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신고·신청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해당 직무 계속 수행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① 신고· 신청인 등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신고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확인·점검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② 확인·점검 내용	
---------------	--

③ 확인·점검 결과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없음 <hr/>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	--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신고·신청인 등”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지가,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공직자,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한 공직자를 적습니다.
- ② “확인·점검 내용”은 신고·신청인 등이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고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해당 직무가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확인·점검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예1)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고, 최저 입찰자를 선정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예2)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기관 홈페이지에 채용 사항을 공고하고, 기관 규칙에서 정한 평정기준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예3)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허가를 처리하는 직무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법령·기준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동일하게 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 ③ “확인·점검 결과”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 ‘특이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합니다.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한 경우, 후속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예1) 신고·신청인 등이 수행한 ○○직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월 예정)
  - 예2)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 수행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함(○○월 ○○일)
  - 예3)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 수행에 대해 ○○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신고·신청인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함(○○월 ○○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신청 사유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부동산 [ ] 보유자 [ ] 매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주소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	--

부동산	유형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	취득(예정)일
	소재지	
	지번	지목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임기 개시일)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①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물품 계약 <input type="checkbox"/> 용역 계약 <input type="checkbox"/> 공사 계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① 요청인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	-----	-----	-----

② 외부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

외부활동 내용	③ 외부활동 주제
---------	-----------

외부활동 내용	④ 외부활동 방법
---------	-----------

외부활동 내용	⑤ 외부활동 일시	⑥ 일괄신고
	20 . . . . ~ 20 . . . .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

외부활동 내용	⑦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본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① “요청인”은 1)공직자에게 지식이나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급한 주체 2)공직자가 대리하는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3)공직자가 취임하려고 하는 직위가 속한 기관을 말합니다.
- ②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 ③ “외부활동 주체”는 공직자가 ①에서 선택한 외부활동 유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언론사 요청으로 ○○○정책 효과에 대한 자문  
2) ○○법인을 대리해 ○○에 관한 소송 수행  
3) ○○단체의 단체장으로 취임
- ④ “외부활동 방법”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서면 자문, 유선 자문 등  
2) 관련 자료 제공, 재판 출석 등  
3) 단체장으로서의 제반 활동 수행
- ⑤ “외부활동 일시”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일시를 적습니다.  
(예) 1) 자문 기간  
2) 대리 기간  
3) 취임 기간
- ⑥ “일괄신고”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연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예) ○○법인에 월 평균 2회씩 1년간 ○○기술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연간 총 24회, 월 평균 2회로 작성
- ⑦ “사례금”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작성합니다. 이 때,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 ① 직무관련자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비용부담자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	--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input type="checkbox"/>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input type="checkbox"/>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input type="checkbox"/>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input type="checkbox"/>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 ) <input type="checkbox"/>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	--

기타 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조사기관

군산시청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8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input type="checkbox"/>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종결사유 <input type="checkbox"/>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군산시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일시	장소	
신고사항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input type="checkbox"/>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input type="checkbox"/> 가족 채용 제한 <input type="checkbox"/>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체결 제한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input type="checkbox"/>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input type="checkbox"/>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담내용			
상담결과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